

제1장 총칙

인명구조견훈련사 자격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인명구조견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에서 시행하는 인명구조견훈련 강사와 훈련사(핸들러)의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인명구조견훈련사라 함은 본 협회의 특별회원으로서 본 협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등급 및 역할

제 3조 (자격등급) 인명구조견훈련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인명구조견훈련 강사
2. 인명구조견훈련사

제 4조 (인명구조견훈련 강사) 인명구조견훈련사 강사는 만 35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협회에서 인명구조견훈련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자로서, 국제 구조견연맹(IRO) 시험규정에 준하여 재난·산악구조견 B레벨에 합격하고 본 협회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인명구조견훈련사 강사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1) 본 협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인명구조견 전문기관에서 동급자격을 취득한 자.
 - (2) 본 협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국내 인명구조견 전문기관에서 동급자격을 취득한 자.

사단법인 한국인명구조견협회

제 5조 (인명구조견훈련사) 인명구조견훈련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협회의 인명구조견훈련사 강사로 부터 구조견 훈련교육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협회가 주관하는 인명구조견훈련사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인명구조견훈련사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1) 본 협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인명구조견 전문기관에서 동급자격을 취득한 자.
 - (2) 본 협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국내 인명구조견 전문기관에서 동급자격을 취득한 자.

제 6조 (역할) 인명구조견훈련사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명구조견훈련사 강사

강사는 구조견훈련의 최고 전문가(지도인력)로 전문적 능력과 훈련사 교육 및 훈련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 (2)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인명구조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3) 해당 전문 영역에서 구조견훈련사와 구조견의 교육, 지도 및 관리
- (4) 해당 전문 영역에서 구조견훈련사의 수련 내용 평가, 심사
- (5) 구조견훈련기관의 설립 및 운영
- (6) 구조견 운용

2. 인명구조견훈련사

인명구조견훈련사는 구조견 전문가(기간인력)로 독자적으로 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해당 전문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 (2) 해당 전문영역에서 구조견훈련사와 구조견의 교육
- (3) 해당 전문영역에서 구조견에 입문한 초보자와 초보견 교육, 지도 및 관리
- (4) 해당 전문영역에서 구조견에 입문한 초보자와 초보견 수련 내용 평가

(5) 구조견 운용

제3장 자격검정 및 전문영역 표기

제 7조 (검정기준) 1. 구조견활용능력이 구조견 전문가로써 구조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2. 구조견훈련사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구조견훈련사 자격증	강사	국제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구조견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조견 심사위원, 구조견 교육자, 구조견 운용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훈련사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구조견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조견 교육자, 구조견 운용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제 8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구조견훈련사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 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강사	실기	복종
		장애물
		후각작업
훈련사	실기	복종
		장애물

			<input type="radio"/> 야지수색구조견 단계 A
			<input type="radio"/> 재난구조견 단계 A
		후각작업	<input type="radio"/> 추적구조견 단계 A
			<input type="radio"/> 야지수색구조견 단계 A
			<input type="radio"/> 재난구조견 단계 A

제 9조 (응시자격) 인명구조견훈련사 자격검정에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응시 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가 연수)

1. 인명구조견훈련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칙의 구조견훈련사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수 감독 및 인명구조견훈련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연수 과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다.

제11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 본 협회의 인명구조견훈련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가 인정하는 구조견전문기관의 인명구조견훈련사 강사로부터 본 협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인준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다.(단, 4조 2항, 5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면한다.)

제12조 (전문영역표기) 인명구조견훈련사 강사 및 인명구조견훈련사는 자격증에 해당 전문영역을 표기한다.

제4장 자격의 유지

제13조 (유효기간) 인명구조견훈련사 자격은 취득시부터 2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본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14조 (자격의 유지) 인명구조견훈련사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회비 납부
2. 인명구조견 출동 및 교육훈련과 상담교육 활동 실시
3. 본 협회에서 개최하는 구조견경진대회 및 행사에 연1회 이상 참여
4. 자격갱신을 위한 연수회 참여

제15조 (자격의 상실) 인명구조견훈련사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 납부
2. 인명구조견 출동 및 교육훈련과 상담교육 활동 실시
3. 본 협회에서 개최하는 구조견경진대회 및 행사에 연1회 이상 참여
4. 자격갱신을 위한 연수회 참여
5. 구조견 매매
6. 금품수수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제5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5조 (자격관리위원회) 인명구조견훈련사 자격관리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관리, 운영하고 인명구조견훈련사 자격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자격심사 및 자격시험관리 전반을 관掌한다. 자격관리위원장은 본 협회장이 임명하며, 시험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운영한다.

제16조 (자격검정위원) 자격관리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가 있을 시 매년 출제위원, 검토위원, 선정검토위원, 시험위원 및 면접위원 등 필요한 자격검정위원을 추천하고 본 협회장은 이들에 대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부 칙

(사)한국인명구조견협회 인명구조견훈련사 자격검정 시행세칙

- 이 자격규정은 본 협회가 공표한 날(2009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 이 자격규정의 개정은 본 협회 이사회에서 행한다.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인명구조견훈련사 자격규정 8조에 명시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인명구조견훈련사 자격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험시기) 본 자격시험은 본 협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시험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시행 1개월 전에 본 협회장이 공고한다.

제4조 (시험관리) 시험관리 절차는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제5조 (설기시험)

- 자격규정에 합당한 자에 한하여 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 설기시험은 IRO 시험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6조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다.
- 면접시험은 면접채점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응시서류) 본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인명구조견훈련사 강사
 - 인명구조견훈련사 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 인명구조견훈련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원서에 부착한 사진외에 사진(반명함) 2매

(6) 회비 및 심사료 납부 증명서

2. 인명구조견훈련사

(1) 인명구조견훈련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 원서에 부착한 사진외에 사진(반명함) 2매

제9조 (자격심사청구) 본 협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 받은 자로서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격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인명구조견훈련사 강사

(1) 자격심사 신청서 1부

(2) 연수기록부

(3) 자격시험 합격통지서 사본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외부 전문기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2. 인명구조견훈련사

(1) 자격심사 신청서 1부

(2) 연수기록부

(3) 자격시험 합격통지서 사본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외부 전문기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제10조 (부칙)

1.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았거나 모호한 사항은 관행에 따른다.
2. 시험관리 절차와 연수과정은 별도 지침에 의거한다.
3.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협회 이사회에서 행한다.
4.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사)한국인명구조견협회 인명구조견훈련사 연수과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인명구조견훈련사 자격규정 제4조에 명시된 인명구조견훈련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과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수과정) 연수과정은 연수감독자의 지도하에 연수기관에서 인명구조견에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연수감독자) 연수감독자는 본 협회의 인명구조견훈련사 강사로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구조견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

제4조 (연수기관) 연수기관은 인명구조견 영역의 관련 기관으로서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연수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5조 (연수기간 및 내용)

1. 연수기간은 인명구조견훈련사 자격규정 제4조, 제5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단, 연수자의 연수내용에 대한 자격관리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연수과정 및 내용은 조절될 수 있다.
2.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특별교육과정으로 연수과정과 내용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연수감독) 연수과정에 있는 자는 본 세칙 제3조의 연수감독자의 지도하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 (연수과정 및 내용) 연수과정 및 내용은 전문가 등급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인명구조견훈련사 강사
전문영역에 따라 본 협회가 규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인명구조견훈련사
(1) 재난구조훈련 30시간 이상

(2) 산악구조훈련 30시간 이상

(3) 연수평점 산정방법

부칙

1.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시행세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협회 이사회에서 행한다.